# 직무관리시행세칙

제정 1995. 3. 1 개정 1997. 1.16 개정 2007. 8.31 개정 2012. 8. 1 개정 2015. 11.6 개정 2016. 12.2 개정 2017. 11.6 개정 2020.11.25

#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직제규정에 의하여 직원의 직무분석, 직무분류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무의 체계적 관리와 인력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1999.11.10> 제2조(용어 정의)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직위라 함은 한 사람에게 부여된 일과 책임의 총체를 말한다.
- 2. 직무라 함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기능에 차이가 없고 책임도 및 난이도가 유사하여인사 및 조직관리상 동일한 취급이 가능한 직위의 집단을 말한다.
- 3. 직무분석이라 함은 직무를 구성하고 있는 일의 내용과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 조건 및 환경조건을 조사·분석하여 기술하고, 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체계화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.
- 4. 직무분류라 함은 직무를 그 종류와 기능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.

### 제 2 장 직무관리

- 제3조(직무분석 실시) ① 직무관리부서장은 직무의 신설 또는 변경에 의해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직무의 변동사항을 조사·확인한다.<개정 1997.1.1>
  - ② ( 삭 제 )<개정 1997.1.1>
- 제4조(직무분석 방법) ① 직무분석에 필요한 직무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은 분석 당시의 여건에 따라 정한다.
  - ② 직무관리부서장은 직무분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무분석 전담반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(직무 확정) ① 직무관리부서장은 공사의 업무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며, 직무는 그 종류에 따라 직군, 직렬, 직무로 분류하고 직무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직무를 확정하며,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개정 2020.11.25>

- ② 직무명칭은 그 직무의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시하여야 한다.<개정 1999.11.10 >
- 제6조(직무의 신설·변경에 따른 조치) ① 각 부서장은 소관직무의 내용이 변경 또는 폐지되었거나 새로운 직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직무관리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직무 기술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직무조사표를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② 직무관리부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제5조에 의하여 직무를 확정하여야 한다.
- 제7조(직무기술서 기재요건) ① 직무기술서에는 직무명, 직군, 직렬, 세부분류 및 내용, 결재자, 직무수행요건을 기재하여야 한다.
  - ② 각 부서장은 직무기술서의 기재사항과 실제 직무수행 내용 및 직무수행 요건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조정·의뢰하여야 한다.

제8조(직무분류 원칙) ① 직무는 그 종류·책임도 및 난이도에 의거 분류하여야 하며, 직무의 특성에 의거하여 직군으로 분류하고, 부문별 기능과 기능의 특수성·전문성에 의거하여 직렬로 분류하며, 여러과업의 스킬, 권한, 책임에 의거하여 직무로 분류한다.<개정 2020.11.25>

- ② 직무의 분류는 직무관리부서장이 별도로 정하여 관리하며, 필요에 따라 대분류(직무), 중분류(업무), 소분류(단위업무)로 세분화해서 관리할 수 있다.<개정 2020.11.25>
- ③ 분류된 직무는 직무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.
- ④ 직군, 직렬의 구분은 별표1과 같다.<개정 2020.11.25>
- ⑤ ( 삭 제 )<개정 1999.11.10.>
- ⑥ 효율적 직무 및 인력관리를 위하여 직무관리부서에서는 전공중심의 직무관리를 별도로 관리한다. <신설 2020.11.25>

### 제 3 장 정원관리

- 제9조(정원 책정) 직무관리부서장은 각 부서장이 작성한 직무기술서 및 직무조사표를 기초로 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직무내용 및 업무량을 분석하여 적정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정원 조정) ① 각 부서의 정원은 직제규정 개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, 반기 단위로 조정·시행할 수 있다.
  - ② 각 부서장은 업무량 증감 및 여건변화 등으로 정원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직무관리부서장에게 정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### 제 4 장 보 칙

제11조(직무관리 기준) ① 직무관리부서장은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직무를 분류·확정하고, 직무기술서 및 직무조사표를 작성하고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- ② 인사담당부서장은 직원의 인사관리에 있어 직무기술서 및 직무조사표가 현실에 맞도록 유지하기 위한 의견을 직무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<개정 1997.1.1>
  ③ 직무관리제도는 조직·정원·인사관리 및 교육훈련 등의 관리기준이 된다.

  부 칙
  이 세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이 세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이 세칙은 1999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이 세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- 부 칙
- 이 세칙은 2015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이 세칙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이 세칙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

이 세칙은 2017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부

칙

칙

- ① (시 행 일) 이 세칙은 2020년 11월25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단, 이 세칙 개정과 연계한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 개정시까지는 개정 전 직군, 직렬체계를 적용한다.

【별표 1】<개정 2020. 11.25>

## 일반직 직군 및 직렬

직 종	직 군		직 렬	직 무		
	74 64	경영기획				
	경 영	,	경영관리			
		정'	비사업관리			
		7] 11]	기계정비			
	정비·운영 (O&M)	정비	계전정비			
	(	时	·  관망관리			
43.23 =3		대외사업		직무관리부서에서 별도로 관리		
일반직		기술사업관리				
	설계·조달·건설	영 업				
	(EPC)	설 계				
		시 공				
	안 전	안전관리		안전관리		
	연구(R&D)	연구(R&D)		-		
	전 산		전 산			

<sup>※ 1~2</sup>급 부서장의 직렬은 별도 구분 없이 공통으로 운영하고, 2~3급 부(팀)장의 직렬은 직군 분류를 적용, 사무·기술의 구분은 직무 정의에 반영

<sup>※</sup>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전공중심의 직무는 별도로 관리 (사무, 기계, 전기, 화공, 토목, 건축, 전산 등)

별정직 · 지원직 직군 및 직렬

직 종	직 군	직 렬	직 무			
	경 영	경영기획				
	78 8	경영관리				
	7) 1) 0 64					
	정비·운영 (O&M)	기지정비				
별정직	(Own)	관로정비				
	אלא שרו או	기술사업관리				
	설계·조달·건설 (EPC)	영 업				
	(El C)	설 계				
	시설환경	시설환경				
	행 정	행정(지원)	기미리키버기시기			
		정비사업관리(지원)	직무관리부서에서 별도로 관리			
	기계 이어	기지정비(지원)				
	정비·운영 (O&M)	관로정비(지원)				
	(0 & 11)	배관망관리(지원)				
		대외사업(지원)				
지원직		기술사업관리(지원)				
	시리 크다 키셔.	영업(지원)				
	설계·조달·건설 (EPC)	설계(지원)				
	(El G)	시공(지원)				
		운영정비(지원)				
	안 전	안전관리(지원)				
	전 산	전산(지원)				

<sup>※</sup> 별정직, 지원직 직무의 경우 일반직 직무와는 책임과 업무범위(업무경로, 업무확장 가능성 등)가 제한적인 보조적·지원적 업무로 구성 (고문, 변호사 등 전문적 지식, 기능, 경험을 요하는 별정직 특수 전문직무 제외)

## 직무기술서

직 군	
직 렬	
직무코드	

담당직무명		직무코드	
담당직무개요			

NO	대분류 업무명	NO	중분류 업무명	NO	소분류 업무명	업무 비중 (%)	1차결재	최종결재
						-		
						_		
						_		
						-		
						-		
						_		

# 직무명세서

직 군		직 렬		직무명	직무코드	
일반적		성도	전 공 (학위기준)		표준적정 직급	
요건	자격/ 면허		최적연령 범위			
	실무지식					
	전문지식	무지식				
	관련법규	년법규				
		NO.	과 목		내 용	
소요 지식	_, _,	1				
	필요한 연수 및	4				
	실무교육	1 2 1				
		4				
		5				
	직무전공	<sup>1</sup> 전공				
본 직	무에서 전환 타 직무	전환 가능한 직무				
협조	및 협의가 필 서	가 필요한 부 서				
	숙련소요	련소요기간				
업무 특성	필요역	필요역량				

## 【별지 제2호 서식】

# 직무조사표

작성일자 :			확인	일자 : .		
작 성 자 : 소속	i.		성	명 :	(ઇ	!)
확 인 자 : 직위			성	명 :	(ર્	!)
직무번호		직무	명			
직(둥)급		- ' ' 직균		직	렬	
1. 직무개요						
2. 직무수행내	<del>3</del> .					
단위업무명	처리절차 및	방법	발생주기 및 빈도 (회/일,주,월,년)	건 당	연간소요 환산시간 (시간)	비고
1	I			1	1	

	(외/일,구,철,년)	소요시간	(시간)	

## 3. 직무수행요건

	표준학력				최적연	년령범위				
일반적	전공	기준①		7]	준②		기준(	3		
요건	성별	기준①		·		활용②	·			
	자격면허									
	지식	학술지스	4							
	77	실무지스	4							
	경력	사외경력	1							
ኔ ለ 느 ፡፡	70 7	사내경력								
소요능력				:상,중,	₩) A	22	ī.	TAL Y	1 7 -1	
	언어능력	국어	하	,1 7	필요	종류:		I	},중,하 	
				:상,중,	외국어	2	)	구어:성	<b>},숭,하</b>	
		70.00	하							
		교육내용								
	사외교육	교육기간								
		교육기관								
필요한		교육방법								
교육정도		교육내용								
	사내교육		교육기간							
			교육기관							
		교육방법	]							
	정신적 요건	사회	지배성	시배성 기기기 능		성 인내성 객관성		사려	책임성	
		성	1 " 0	안정성	000	2 ,, 0	160	성	1 1 0	
직무요건										
	신체적	용모	신경	} 체중	시	력	청력	기타신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
	요건	상, 중,	하		좌: -	우:				
	대물책임	금:		문서・	장표	비결		기계・	장비	
	네르색급	상, 중				상, 중, 하		상, 중, 하		
책임과	대인책임	인사	·				비밀유지		업무과실	
권한	-116-76	상, 중		상, 중, 하		상, 중, 하		상, 중, 하		
	권한책임	결재					금전		인사고과	
-1.1		상, 중	-	상, 중	·, 하	상, 중			5, 하	
작업조건	일반환경	작업?		<b>北</b> ス	اج ا	작업2			5, 하 5 원	
및	작업내용	반복	빈도	상, 중	·, 하	동질	エ	상, 중	5, 하	
방법	위해내용									
	전환가능	1		2			3			
직무특성	직무		) 177					L -1 17		
	직무경로	본 직무 전 최적 직무         ①       ②			1	죄송 기	·능 직무 ②			
	현직무					1 9				
	담당자									
기타	의견									
	확인자									
	의견									
	ግኂ									